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9. 4. ~ 9. 1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22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28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3. 9. 15.)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석균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석균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9)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광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제용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종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찬성 의원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이한영 의원	수정가결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3. 9. 15.)
안전건설 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속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양속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원안가결
교육 위원회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김용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박길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2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9. 15.(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으로 조정·정비하는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로는 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새마을운동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생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공자장학금과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인 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우등생장학금이 있고, 이 장학금은 등록금 등 학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를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발의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공동발의 :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박찬홍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산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의 돌봄 문제로 인하여 산후조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현재 지원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비용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영유아 돌봄 이용 본인부담금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오섭 의원



김정수 의원



박찬홍 의원



최규만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료인 등에게 치매연구·치매 검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아동공동생활가정 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의 운용·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기관·단체 및 그 소속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현행 조례의 축구장 시설 전용 사용료를 낮추도록 조정함으로써 축구장 시설 이용자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축구장을 체육경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사용료는 1경기 2시간 기준으로 평일과 토/공휴일에 각각 500,000원과 650,000원에서 200,000원과 300,000원으로 변경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한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을 각각 1명 이상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회의지원협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지원협회는 안전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 공동발의 : 원제용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자치도 내 권역별 영상산업육성 및 발전의 형평성과 균형을 조절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등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거나 영상미디어센터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심오섭 의원



원제용 의원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원제용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최종수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홍성기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3),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 공동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3),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자전거법 제12조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지하철·학교·공공기관·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춘천6)

■ 공동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춘천3),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춘천1)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점용공사 중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교통·도로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숙희 의원



박기영 의원



박관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횡성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규정된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의무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의무화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으로 한다. ② 상담의 내용은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③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교류, 교직원 및 학생 연수,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강릉3)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지원계획(이하 “안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안전수칙, 안전사고 대처요령, 응급상황 처리과정,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대피도 등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학교의 장 등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학교의 장 등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및 보호복 등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 유지 등의 관리·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학교의 장 등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철원2)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근로 권리와 관련한 문제해결능력을 갖도록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②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③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태 및 근로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철원2)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수정·보완하고, 통일교육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②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배려·소통 능력 배양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수·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조성은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1)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 발의 : 박길선 의원(교육위원장·국민의힘·원주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제로 관리하고,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를 정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등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사유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문변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사무로서 각종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포함)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적용,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한다. ② 교육감은 5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